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  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〉  
■ 김선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048호)

2024. 8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전문위원 유 인 규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| 1 |
|-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| 1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III . 검토의견 ..... | 2 |
|---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 ..... | 2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## ※ 참고자료

|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화재공제 제도 개요 ..... | 7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. 화재공제 상품 예시 및 보험가입금액 분포 ..... | 8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3.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원인별 현황 ..... | 9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## 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선교의원 등 11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6. 27.
3. 회부연월일 : 2024. 6. 28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.

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,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.

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,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

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

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이 내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)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) ①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| 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<u>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공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|
|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, 가입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③ -----<br>----- <u>절차</u><br><u>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,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‘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사업’<sup>1)</sup>을 수행하고 있음.

‘2022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’<sup>2)</sup>에 따르면, 화재보험(민간보험 또는 화재공제)에 가입한 시장은 전체(1,388개) 중 407개(29.3%)<sup>3)</sup>로 파악됨. 동 조사에 따르면,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는 필요성 못 느낌(57.5%), 보험료 부담(33.2%), 정보 부족(6.5%) 등으로 나타남.

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, 2024년 5월말 기준 전국 시·도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1.8%로, 가입률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

---

1) 동 사업은 상인 스스로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, 정부는 가입모집, 홍보·마케팅 등 사업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.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된 지원예산은 9억 9,000만원임.

2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‘2022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’, 2023.12.

3) 점포 기준 화재보험 가입률은 66.4%이며, 화재보험 가입 유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(69.3%), 민영 손해보험(25.0%), 둘 다 가입(5.7%)으로 나타남.

회4)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거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료를 지원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.

[표 1] 전국 시·도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현황(2024. 5월말)

| 구분 | 전체<br>영업점포(개) | 가입점포<br>수(개) | 가입률<br>(%) | 구분 | 전체<br>영업점포(개) | 가입점포<br>수(개) | 가입률<br>(%)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서울 | 38,680        | 9,140        | 23.6       | 강원 | 6,486         | 3,556        | 54.8       |
| 부산 | 22,561        | 6,753        | 29.9       | 충북 | 5,468         | 2,314        | 42.3       |
| 인천 | 10,847        | 3,300        | 30.4       | 충남 | 6,667         | 2,253        | 33.8       |
| 대구 | 12,752        | 3,670        | 28.8       | 전북 | 4,050         | 1,438        | 35.5       |
| 광주 | 2,669         | 910          | 34.1       | 전남 | 5,907         | 2,032        | 34.4       |
| 대전 | 2,660         | 939          | 35.3       | 경북 | 13,786        | 4,374        | 31.7       |
| 울산 | 3,579         | 1,266        | 35.4       | 경남 | 14,131        | 4,817        | 34.1       |
| 세종 | 526           | 110          | 20.9       | 제주 | 3,583         | 1,116        | 31.1       |
| 경기 | 20,502        | 7,588        | 37.0       | 합계 | 174,854       | 55,576       | 31.8       |

자료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한편,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4건으로 연평균 54.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, 건당 재산 피해규모는 2,3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됨.

[표 2]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

| 구분        | 발생건수(건) | 인명피해(명) |    | 재산피해(백만원)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| 사망      | 부상 |           |
| 2020년     | 59      | -       | 3  | 2,838     |
| 2021년     | 53      | -       | 2  | 994       |
| 2022년     | 64      | -       | 10 | 723       |
| 2023년     | 60      | -       | 1  | 1,680     |
| 2024년(6월) | 38      | -       | 1  | 106       |
| 합계        | 274     | -       | 17 | 6,341     |

자료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4) 국민권익위원회, ‘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’, 2022.12.19.

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.

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<sup>5)</sup>. 유사입법례로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<sup>6)</sup> 및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<sup>7)</sup>를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.

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전통시장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,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--

5) 시·도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및 보조율 현황을 살펴보면, 공제료 지원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화재공제 가입률(20.9%)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, 공제료 지원이 가입률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.

6)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

제7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7)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

제19조(재정지원)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운영비”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465 |

## 【참고자료】

### 1

### 화재공제 제도 개요

#### □ 개요

- **(사업목적)**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'전통시장 화재공제' 도입·운영
- **(지원내용)**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,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(소진공)
- **(지원예산)** 9.9억원
- **(가입현황)** '24년 6월 말 기준, 총 55,412건, 적립금 153억원

(단위: 곳)

| 구분     | '17년  | '18년   | '19년   | '20년   | '21년   | '22년   | '23년   | '24.6월 |
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가입점포 수 | 7,053 | 12,380 | 21,790 | 26,921 | 35,865 | 46,778 | 52,916 | 55,412 |
| 가입률    | 3.9   | 6.8    | 12.0   | 14.8   | 19.7   | 25.7   | 30.3   | 31.7   |

#### □ 운영 방식 및 가입내용

- **(방식)**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
  - \*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상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60~80% 지원
- **(가입단위)** 전통시장 內 개별점포
- **(가입목적물)** 건물, 시설, 재고자산, 타인의 재물 및 신체(특약\*)
  - \* 음식물 배상책임, 화재별금('18.7월) 및 휴업손해 담보특약('21.1월) 등
- **(보험료)** 주 계약은 10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목적물에 따라 상이(연납보험료 참고)
  - \* 장기가입(3년) 시 할인 혜택 부여(3년간 300→250% 납부)하고, 이 비용 중 지자체가 최대 80%를 부담하여 상인 부담은 낮은 편
- **(보상금액)** 최대 6천만원 이내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

## 2

## 화재공제 상품 예시 및 보험가입금액 분포

## □ 화재공제 상품 예시

| 구분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천만원<br>(건물/동산 각 1천만원) | 4천만원<br>(건물/동산 각 2천만원) | 6천만원<br>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계약 | 재물손해          | A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66,000원              | 연 132,000원             | 연 198,000원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101,500원             | 연 203,000원             | 연 304,500원             |
| 특 약 | 화재배상책임        | - 추가공제료 : 연 6,200원<br>- (대인) 1인당 사망1억, 부상 2천만원 한도 / (대물) 1억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임차자배상책임       | -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% 할인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음식물배상책임       | - 추가공제료 : 연 16,600원 (자기부담금 30만원)<br>- 대인 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<br>- 대물 : 1사고당 1천만원,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화재벌금          | - 추가공제료 : 연 100원<br>- 벌금형 확정 판결 시 (형법 170조) 1.5천만원<br>(형법 171조)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시설소유·관리자 배상책임 | - 추가공제료 : 연 26,600원 (자기부담금 10만원)<br>- 대인 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<br>- 대물 : 1사고당 1억원,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점포휴업일당        | - 추가공제료 : 연 2,400원<br>- 점포휴업일당(3일초과)=복구기간내 휴업일수×1일당 가입금액(5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건물구조급수(A/B급) : 건물의 기둥/보/바닥, 지붕(틀),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

\*\* 가입한도 : 최대 6천만원 이내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, 주 계약의 경우 100만원단위로 가입가능

## □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별 가입 현황

(단위 : 건, %, '24.6월 기준)

| 계약 조건       |                 | 2024.6월말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주계약<br>재물손해 | 100만원~2,000만원   | 34,226 (61.8)  |
|             | 2,100만원~4,000만원 | 15,450 (27.9)  |
|             | 4,100만원~6,000만원 | 5,736 (10.3)   |
|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| 55,412 (100.0) |
| 특약          | 화재배상책임          | 54,710 (98.7)  |
|             | 임차자배상책임         | 20,495 (37.0)  |
|             | 음식물배상책임         | 4,387 (7.9)    |
|             | 화재벌금            | 51,933 (93.7)  |
|             | 시설소유·관리자배상책임    | 10,179 (18.4)  |
|             | 점포휴업일당          | 28,295 (51.1)  |

\* 자료출처 : 국가화재정보시스템(www.nfds.go.kr)

## □ 최근 5년 간 화재발생 현황

○ 연평균 화재발생 54.8건, 재산 피해 12.6억원(건당 23백만원)

(단위 : 건, 백만원)

| 구 분     | 발생건수(건) | 인명피해(명) |     | 재산피해(백만원)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| 사 망     | 부 상 |           |
| 2020년   | 59      | -       | 3   | 2,838     |
| 2021년   | 53      | -       | 2   | 994       |
| 2022년   | 64      | -       | 10  | 723       |
| 2023년   | 60      | -       | 1   | 1,680     |
| 2024.6월 | 38      | -       | 1   | 106       |
| 합 계     | 274     | 0       | 17  | 6,341     |

## □ 최근 5년 간 화재원인별 현황

○ 전기적 요인 40.4% > 부주의 34.4% > 기계적 요인 9.9% > 미상 8.5% > 順

&lt;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원인 현황 &gt;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      | 전기   | 기계  | 화학  | 가스  | 부주의  | 자연  | 방화  | 방화 의심 | 미상  | 기타  | 합계  |
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
| 2020     | 29   | 7   | 1   |     | 23   |     |     |       | 5   |     | 65  |
| 2021     | 27   | 5   | 1   |     | 20   |     |     |       | 3   | 1   | 57  |
| 2022     | 27   | 3   |     | 1   | 20   | 1   | 2   | 1     | 6   | 1   | 62  |
| 2023     | 21   | 7   | 3   |     | 17   | 2   | 1   | 1     | 8   |     | 60  |
| 2024(6월) | 10   | 6   | 2   |     | 17   |     |     | 1     | 2   |     | 38  |
| 합계       | 114  | 28  | 7   | 1   | 97   | 3   | 3   | 3     | 24  | 2   | 282 |
| (비중)     | 40.4 | 9.9 | 2.5 | 0.4 | 34.4 | 1.1 | 1.1 | 1.1   | 8.5 | 0.7 | 100 |